

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중앙아시아의 주요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자매결연협정 동의를 의회에 요구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수도 아스타나간 자매결연협정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와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수도 아스타나시는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양 도시간의 번영과 관계발전을 위하여 행정, 경제,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고 민간분야의 교류를 상호 지원하겠다는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1. 환경, 방재,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도시행정분야에서의 정보교환 및 관계공무원의 상호 방문을 적극 추진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간의 교류를 지원하며, 상대도시에 경제사절단을 상호 파견한다.
3. 양 도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대도시의 요구에 따라 기념축제에 전통공연단 및 예술단을 상호 파견하며, 우선 2005년도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아스타나시 전통공연단을 파견한다.
4. 미래세대인 양도시 청소년의 교류증진을 위해 미술작품 교환전시, 스포츠 교류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우선 2005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아스타나시를 참여토록 한다.
5. 기타 양 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본 자매결연협정서는 한국어와 카자흐어로 각각 작성하고, 양 도시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아스타나시장이 이에 서명하며,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아스타나시장
티미르칸 도스무한 베로프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549 |
|------|-----|

2004년 9월 7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4.9.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국장 권영규)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재정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에

서 사용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재산)

○ 본관건물 및 부대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 연면적 : 353.43m²(지상2층)
- 토 지 : 537.20m²

○ 별관건물 및 부대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 연면적 : 264m²(지상 6층 건물 중 5층 일부)

○ 사용기간 : '04. 3. 15 ~ '04. 7. 14(3년간)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재정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중구 예장동 4-6외 1)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제8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제안된 것임.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 재정출연 공익법인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외 1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 2004. 3. 15에 설립되어 현재 위치의 공유재산을 사무실로 사용해온 지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에 사후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염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있어 향후 유사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효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유재산무상대부사용동의안

서울특별시 재정 출연기관인『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 제8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무상대부 사용대상 재산(목록 : 별첨)

1) 서울문화재단 본관

○ 건물 및 부대시설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 연면적 : 353.43m²(지상2층)

○ 토 지 : 537.20m²

2) 서울문화재단 별관